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63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김동아 · 이건태 · 박균택
정준호 · 양부남 · 윤준병
최혁진 · 허성무 · 정춘생
김남희 · 안도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고위험 성격의 엔젤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나 현재는 엔젤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투자에 보다 큰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다목·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1.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마.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나.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

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2) 1)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

제88조의4제1항·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를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를 “같은
항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
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
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

[illegible]

1.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
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
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
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
에 투자하는 경우

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
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
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

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마.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 공제금액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나.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u>투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u>
	<u>1)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5천만원 초과분부터 1억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1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30</u>
	<u>2) 1)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u>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② ----- ----- ----- ----- ----- ----- -----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

-----.

1.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

2. 제1항제1호나목-----

3. 제1항제1호다목 · 라목 및 바목-----

③ -----
-----같은 항 제1호다목 · 라목 또는 바목-----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생략)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 ⑦ (생략)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

1. -----제1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 ⑭ (생략)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항제1호다목-----

-----.

2. -----제16조 제1항제1호다목-----

-----.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u>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u>)	3. ----- ----- --- <u>같은 항 제1호다목·라목 또는 바목</u>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